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000961-10

www.moe.go.kr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2023. 12.



일러두기



- 본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질의·회신 사례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 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례들을 일부 수정·편집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를 일반화하거나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 등의 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인용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적용 시점에 따라서는 본 사례집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part I 유아·특수교육

유아교육 3

1. 국공립 유치원 우선선발 다자녀 문의 4
2. 유치원 교원 임용 티오 확대해주세요 5

유아교육-전화문의 7

3.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의 유아학비 사전 신청 자격 8
4. 2023년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에도 사전신청 가능 여부 9
5. 유아학비 사전신청 시 부모의 주소지 관련 10
6.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신청 방법 11
7.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시간 조정 동의서 작성 관련 12
8. 유아학비 지원의 수업일수 관련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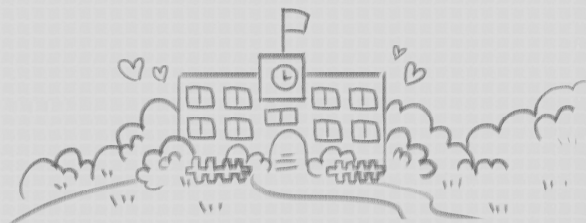
특수교육 15

9. 특수학교의 재량휴업 지정 및 돌봄교실 16

특수교육-전화문의 17

10. 안마사 자격 취득 수련과정 운영 학교 현황 18





part **II**
초·중등교육

교육과정 21

1. 초등학교 교과서 구입 방법 22
2.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구입 방법 23
3. 중학교 국어 교과서 내용 문의 24
4. 특정 역사 인물에 대한 판단 문의 25
5. 학교 인성교육 강화 26
6.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3호 유권해석 및 학교운동부의 정의 27
7. 학교운동부지도자 급여 산정 주체 28
8. 학생선수 보충학습 방식 개선 요청 29
9.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 시 부대용역비 예산 분리 편성 및 지역서점 활성화 30
10. '사서' 유사명칭 사용금지 안내 31

교육과정-전화문의 33

11. 2022개정 교육과정 영문판 유무 34
12.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았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재 관련 35
13. 과학중점학교 현황 확인 방법 36
14.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 증빙 자료 제출 관련 37
15. 전입학 시 전출일과 전입일 처리 관련 38
16.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기 교과서 주문 관련 39
17.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사용지도서 파일 다운 방법 40

교육복지 41

18. 초등학교 입학 관련 42
19. 교육급여 사용처 제한 43
20. 교육급여 바우처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44
21. 퇴근시간 이전에 교과 담당교사가 방과후 수업에 강사로 참여 가능한지
궁금해요 45
22. 다문화가정 돌봄 혜택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46
23.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47
24.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게 연장해 주세요 48

CONTENTS

part II 초·중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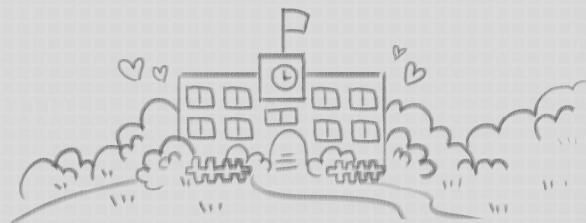
교육복지-전화문의 49

- 25. 유급생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 여부 50
- 26. 고령자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 여부 51
- 27. 특수학교 전공과의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대상기관 여부 52
- 28. 난민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 여부 53
- 29. 보호치료시설 입소 시 교육급여 보장 중지 여부 54
- 30.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 시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55
- 31.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를 수령하기까지의 시간 56
- 32. 교육급여 바우처 대리 수령 및 현금 지급 가능 여부 57
- 33. 교육급여 자격 중지 시 환수 여부 58
- 34. 교육급여 자격 중지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가능 여부 59
- 35. 교육급여 운영 방안에 안내된 용어 '전송'의 의미 관련 60
- 36.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더라도 별도로 우편으로
보내주는지 여부 61
- 37. 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이 아닌 부모의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여부 62
- 38. 세대원의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여부 63
- 39. 외국인일 경우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여부 64
- 40. 온라인 취학통지서 재교부 방법 65
- 41.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기간 경과 시 취학통지서 수령 방법 66
- 42.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취학통지서 재교부 가능 여부 67
- 43. 온라인 취학통지서로 배정받은 학교를 다른 학교 바꿀 수 있는지 여부 68
- 44. 조기입학, 입학연기 시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여부 69
- 45. 입학연기 신청을 철회하고 취학을 요청하는 경우 70

학생건강, 안전 71

- 46.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문의 72
- 47. 독감 환자(학생) 격리 기간에 대한 질의 73
- 48. 학생 마약예방 교육 관련 질의 74
- 49.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문의 75
- 50. 유치원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요청 76





part II

초·중등교육

51. 지진안전교육 추진현황	77
52. 재난대비 행동요령 도서 보급 및 비치 요청	78
53. 학교시설 안전점검 관련	79
54. 교육시설안전 인증 제도 관련	80
55.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평가 관련	81
56.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관련	82
57. 교육시설법에 따른 사전기획 관련	83
58. 학교복합시설 관련	84

학생건강, 안전-전화문의 85

59.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시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의무 제출 여부 ..	86
60.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 세균성이질 필수 진단항목 여부	87
61. 졸업자의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가능 여부	88
6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사유	89
63. 교육부 발행의 학생 비만 관리 및 예방 교육 자료 열람 방법	90
64. 초등학교의 학교안전교육 중 심폐소생술교육 운영 방법	91

교원 93

65. 교원의 휴직 중 겸직 허가 관련	94
66. 가족돌봄휴직 운영 방안 관련	95
67. 방학 중 교원의 출근 여부 관련	96
68.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사전예고	97
69.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필요	98
70. 가족수당 세대주 요건 필요 여부	99
71. 학교 강사 경력 인정 여부	100

교원-전화문의 101

72. 명예퇴직 교원의 병가 일수	102
73. 교육대학원 휴학 중 소속 학교에서 이수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인정 가능 여부	103
74. 특수교사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104
75. 학교현장실습기간 중 주말을 이용해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의 인정 여부	105

CONTENTS

part II 초·중등교육

76. 교원임용시험에서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관련	106
77. 교원임용시험의 국가교육과정 출제 범위	107
78. 교육부 홈페이지의 교원양성기관 현황 중 교육대학원에서 자격종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의 의미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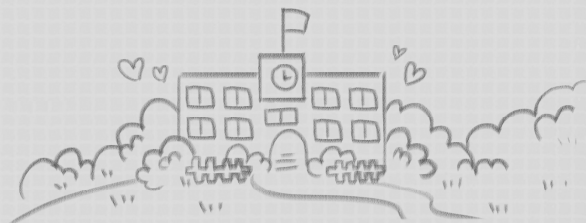
part III 고등교육

대입제도, 장학 등	111
1.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관련	112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관련	113
3.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확대 요청	114
4. 지역인재 선발 제도 및 지역인재 전형 질의	115
5. 군 휴학 시 등록금 반환 및 이월	116
6.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118
7.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전월세보증금의 재산 반영 방법	119

대입제도, 장학 등-전화문의	121
8. 수능 응시원서 작성 시 졸업연도 표기	122
9. 대입 실기고사 응시 중에 수험생이 다쳤을 경우 보상 관련	123
10. 고교 추천전형의 추천자 명단 변경 가능 여부	124
11. 농어촌특별전형 지원 자격 관련	125
12. 체육특기자전형 시 학년별 경기실적 반영 비율	126
13. 검정고시생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 여부	127
14. 대학 입학금 징수 관련	128

대학(원) 운영 등	129
15. 서울 소재 대학을 지방이전 요청	130
16.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대학기본역량진단 관련 질의	131
17. 지방대육성법의 지방대학에 특별법에 따른 대학 (경찰대, KAIST 등)도 포함되는지 문의	132





part III

고등교육

18. RISE와 RIS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	133
19.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134
20. 국립대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135
21. 회계연도 말 예비 지급 관련	136
22. 강사로 지급 기준 관련	137
23. 학교법인 임원 선임 관련	138
24.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관련	139
25. 사립학교법 제23조에 따른 이사장의 겸직금지 범위 질의	140
26. 학교법인 임원의 이사회 회의록 서명 방식 질의	141
27. 대학원 연구과정 학생의 학점인정 가능 여부	142
28.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신설 관련 교원 자격	143
29. 대학원 동시 등록에 관한 사항	144

대학(원) 운영 등-전화문의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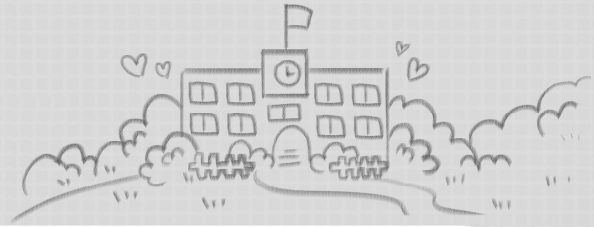
30. 부모가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	146
31.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 도입 여부	147
32. 대학 교직원의 성범죄에 따른 인사 조치 관련	148
33. 2022년 이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관련 가이드라인' 확인 방법	149
34. 사립대학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	150
35. 대학생 현장실습생에게 명절비 지급 가능 여부	151
36.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학교 주간수업 병행가능 여부	152
37.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 확인 방법	153
38.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표준 매뉴얼 열람 방법	154
39. 개인사업자의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생 입학 자격 요건	155
40.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 시 제출 서류	156
4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전과 가능 여부	157
4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 시 학력 표기 관련	158
43. 대학 자진 폐지 시 학생 동의 관련	159
4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관련	160

CONTENTS

part IV 국제교육· 평생교육

국제교육	163
1. 한국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인지 질의	164
2. 외국대학 학위 인정 여부	165
3.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요청	166
4. 유학생 유치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	167
평생교육	169
5. 평생교육시설에서 개설 가능한 교육과정의 범위	170
6. 직원연수 목적으로 소속 직원(성인) 대상 1:1개인교육 시 학원법 적용 여부	171
7. 지자체 공모사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사업 수행 중 소수의 학생들에게 일회성 체험 제공 시(수익자부담비 발생) 학원법 적용 여부	172
평생교육-전화문의	173
8. 요가학원의 <학원 등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174
9. 학원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 범위	175
10. 개인과외교습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가능 여부	176
11.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술 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부	177
12. 장애 대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	179





part **V**
기타

1. 교육부 국유재산 용도폐지 시 관리·처분 183
2. 개편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184
3. 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 자격증 취득 비용의 성격 185
4. 교육부 홈페이지 읽기전용프로그램 이용자 제한 여부 186

I

유아·특수교육

2023년도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유아교육

1. 국공립 유치원 우선선발 다자녀 문의 4
2. 유치원 교원 임용 티오 확대해주세요 5

1. 국공립 유치원 우선선발 다자녀 문의



질의요지

우선순위 다자녀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11-03 (책임교육정책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교육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모집·선발시기, 절차 및 방법을 정한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공립 유치원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로 한정된 것이 아니며, 다자녀의 인정 범위와 기준은 각 시·도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 또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유치원 교원 임용 티오 확대해주세요



질의요지

공립유치원 신규교사 선발인원 증원 및 교사 대 유아 비율 감축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3-08-16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공립의 각급 학교(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교원)의 정원은 시도 교육청의 소요정원 수요조사 및 우리부와 국가공무원 정원을 총괄하는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퇴직 등에 따른 결원 규모, 취원 유아의 감소에 따른 유치원 통폐합 규모, 유치원 신증설 계획, 임용 대기 인원 등 교원 수급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여 매년 신규 임용 선발 규모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아교육-전화문의

3.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의 유아학비 사전 신청 자격	8
4. 2023년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에도 사전신청 가능 여부	9
5. 유아학비 사전신청 시 부모의 주소지 관련	10
6.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신청 방법	11
7.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시간 조정 동의서 작성 관련	12
8. 유아학비 지원의 수업일수 관련	13

3.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의 유아학비 사전 신청 자격

질의요지

유아학비 사전 신청 기간이라 온라인으로 유아학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소유자 외에도 유아학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2-07 전화문의(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구성원으로 있다면 국민(아이)행복카드 실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구성원이 아닐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2023년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에도 사전신청 가능 여부

질의요지

어제까지 유아학비 사전 신청 기간이었는데,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3월 3일이 유치원 개학일인데, 2023년 3월 2일에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면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2-27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2023년 유아학비 사전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6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2월 24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만약 오늘(2월 27일) 또는 내일(2월 28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면, 서류를 작성하여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3월 1일자로 유아학비 지원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3월 1일부터의 적용이 어렵다고 안내하거나 2월 28일까지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3월 1일에만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당월 신청을 하여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신청일이 3월 2일부터는 일할 계산되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에듀콜센터(1577-007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유아학비 사전신청 시 부모의 주소지 관련



질의요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유아학비 사전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회신내용

2023-02-07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부모의 주소지가 같지 않더라도, 아이와 같은 주소지가 아닌 부모 중 한 분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유아학비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에듀콜센터 (1544-007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신청 방법



질의요지

북지로에서 유아학비를 신청하는 중인데, 방과후과정비를 신청하는 항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방과후과정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신내용

2023-02-16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북지로(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를 신청하는 것은 (기본)교육과정비나 방과후과정비를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3~5세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것이니 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방과후과정비 신청은 후속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면 학부모님께서 유치원을 방문하여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카드 인증을 통해 "이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가 유아학비 지원을 받도록 해주세요"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방과후과정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과정비 지원 신청은 유치원에서 진행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유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에듀콜센터(1544-007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시간 조정 동의서 작성 관련



질의요지

유치원에서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방과후과정 이용 시간을 1~2시간 조정하기 위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염려'라는 사유로 제시되었으나, 저는 이러한 시간 조정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치원 측에서는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당한 조치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3-02-23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조정 동의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방과후과정비가 지원됨을 안내 드립니다.

8. 유아학비 지원의 수업일수 관련



질의요지

교육부 유아학비지원 지침에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5일에 토요일을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3-08-14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

-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의 '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에 의하면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재량휴업일을 의미하며, 휴일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업일수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예: 토요일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평일과 동일하게 봄)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을 전후 토요일 전인 금요일과 일요일 후인 월요일 모두 결석을 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교육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토요일 전인 금요일이나 일요일 후인 월요일 중 하루라도 출석 시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교육일수로 인정합니다. 다만, 토요일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토요일을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교육일수를 산정합니다.



특수교육

9. 특수학교의 재량휴업 지정 및 돌봄교실	16
-------------------------------	----

9. 특수학교의 재량휴업 지정 및 돌봄교실



질의요지

특수학교의 재량휴업일 운영과 돌봄교실 대상자 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3-2-2 (교육돌봄지원관 특수교육정책과)

- 먼저, 학교의 재량휴업일 운영은 「초중등교육법」제24조(수업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47조(휴업일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재량휴업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및 담임 추천 대상자 등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학교별로 학교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교 및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및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등 다양한 방과후 활동 및 돌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대상 월 66시간(월~토요일 09시~21시) 여가활동 및 자립준비 활동 등 제공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 가정 대상 돌봄서비스 또는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

※ 참고: 장애자녀부모지원사이트(www.nise.go.kr/onmam)-교육·복지제도-생애주기별 주요제도/발달장애인 지원제도



특수교육-전화문의

10. 안마사 자격 취득 수련과정 운영 학교 현황	18
-----------------------------------	----

10. 안마사 자격 취득 수련과정 운영 학교 현황



질의요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특수학교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3-09-27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특수교육정책과)

- 안마사 자격은 「의료법」 제82조(안마사),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안마사의 자격인정)에 의거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마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각장애 특수학교 현황은 교육부 홈페이지*의 '2023년 특수교육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특수교육통계' 검색

II

초·중등교육

2023년도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교육과정

1. 초등학교 교과서 구입 방법	22
2.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구입 방법	23
3. 중학교 국어 교과서 내용 문의	24
4. 특정 역사 인물에 대한 판단 문의	25
5. 학교 인성교육 강화	26
6.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3호 유권해석 및 학교운동부의 정의	27
7. 학교운동부지도자 급여 산정 주체	28
8. 학생선수 보충학습 방식 개선 요청	29
9.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 시 부대운영비 예산 분리 편성 및 지역서점 활성화 ..	30
10. '사서'유사명칭 사용금지 안내	31

1. 초등학교 교과서 구입 방법



질의요지

실수로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실하였습니다. 교과서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2022-09-19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

- 교과서 구입은 (사)한국교과서협회 또는 해당 출판사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교과서 구입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사)한국교과서협회 또는 해당 출판사로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구입 방법



질의요지

2007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한 권을 구하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3-05-25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

- 우선 귀하께서 문의하신 교과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두산동아)로 2009년에 출판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허나 교육과정 적용 시기가 지난 교과서의 경우 별도로 판매하고 있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교과서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하 재단) 내 교과서정보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3 한국교과서연구재단, 02-2651-1950)에 현재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교과서 열람을 원하실 경우, 재단에 방문하시거나 원문DB 열람 방법을 재단을 통해 전달받으신 후 재단 협약도서관에서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중학교 국어 교과서 내용 문의



질의요지

국어 교과서에서 문학 작품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신내용

2023-07-25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

-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검정도서로 다양한 출판사에서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집필하고 검정심사를 거쳐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 감상하기를 지도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해당 교과서에 대한 정보(출판사, 저자 등)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 아울러, 교과서 내용의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www.textbook114.com)'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접수된 의견은 해당 교과서의 발행사(집필진)에게 전달되며, 집필진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교과서 수정 보완이 이루어짐을 안내드립니다.

4. 특정 역사 인물에 대한 판단 문의



질의요지

학교 수업에서 특정 역사 인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특정 역사 인물이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게 맞나요?

회신내용

2023-10-13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

- 특정 인물에 대한 역사적 판단은 학계의 연구 성과와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개인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 역사 교육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도 이를 바탕으로 인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우리 부는 특정 인물에 대해 편향되지 않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5. 학교 인성교육 강화



질의요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해주세요

회신내용

2023-11-08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교육부는 학생의 삶과 연계하여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활동에서 예절, 효, 배려 등 인성교육의 핵심가치 및 덕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의 안착,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등의 추진을 위해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및 ‘인성교육 종합계획(‘21~’25)’을 수립하여 다양한 인성교육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자료 보급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3호 유권해석 및 학교운동부의 정의



질의요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 유권해석 및 학교운동부 정의는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2023-2-1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학교운동부란 법제2조제4호의 학생선수들로 구성되며, 학교운동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에 따릅니다.

7. 학교운동부지도자 급여 산정 주체



질의요지

‘학교운동부 지도자 급여 산정’ 주체는 누구인지요?

회신내용

2023-1-18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계약의 주체가 결정합니다.

8. 학생선수 보충학습 방식 개선 요청



질의요지

학생선수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학습 방식 보완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내용

2023-1-18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우리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여에 따른 수업결손 보충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선수 e-school 초등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e-school 등 학생선수 보충학습 미이행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학교체육 업무담당자, 전문가와 협의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 시 부대용역비 예산 분리 편성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질의요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 시 부대용역비 예산 분리 편성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2023-03-10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우리부는 학교도서관 업무담당자들이 원활하게 학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국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2023)」을 전국 학교에 배포하였으며, 동 매뉴얼 등을 통해 자료구입 절차 등에 대한 관련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학교현장에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우리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19~'23)에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하는 등 지역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 ‘사서’유사명칭 사용금지 안내



질의요지

‘사서’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법률개정 내용을 학교 현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회신내용

2023-04-03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귀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법」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제55조(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해당 법령이 개정된 2021년부터 시도 담당자 협의회 및 공문 안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 또한 우리부는 「전국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2023)」 개정 시 “사서 유사명칭 금지”에 대한 법령 등 관련 내용 안내를 포함하였으며, 전국 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본을 기 배부('23.03.28.)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해당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교육과정-전화문의

11. 2022개정 교육과정 영문판 유무	34
12.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았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재 관련	35
13. 과학중점학교 현황 확인 방법	36
14.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 증빙 자료 제출 관련	37
15. 전입학 시 전출일과 전입일 처리 관련	38
16.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기 교과서 주문 관련	39
17.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사용지도서 파일 다운 방법	40

11. 2022개정 교육과정 영문판 유무



질의요지

2015개정 교육과정 영문판을 보고 있습니다. 2015개정 교육과정 이후에 나온 것은 없나요?

회신내용

2023-05-26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 영문판은 개발 연구 중에 있으며, 개발 보급은 2023년 하반기 이내에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2.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았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재 관련

질의요지

현재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이 10월 발령으로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는데, 현재 고1, 1학기는 다 마쳤고 2학기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9월 말에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있을 예정이고, 10월 말에 모든 가족이 출국을 하게 되는데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고 출국을 하면 중간고사를 본 것까지 학생부에 올라가나요? 아니면 2학기 기말고사까지 치러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함께 해서 2학기 전체 성적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8-23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성적은 학기 단위로 기재되기 때문에 중간고사 성적만으로는 학기말 성적이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지는 않았으나 학적이 유지된다면 해당 학교의 성적인정점이 부여되면서 성적처리가 되겠지만, 중간고사만 보고 자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학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지 않아 중간고사 성적만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등록이 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13. 과학중점학교 현황 확인 방법



질의요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과학중점고등학교에 대한 현황 등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3-04-05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과학중점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화된 과학·수학 교육과정 및 과학 탐구활동운동을 통해 우수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최초 시작된 2009년에 53개교로 시작되어 2012년에 100개교로 증가했고, 이후 2016년에는 112개교, 2019년에는 124개교가 운영되었습니다. 과학중점학교 지속 운영 계획('15.6)과 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18.12)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각 시도에 운영을 전면 이양하였습니다. 즉, 2019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하는 2021학년도까지 지속 운영되었으며 2022년부터 시·도로 이양이 진행되었습니다.
- 우리 부에서는 과학중점학교에 대한 업무가 시·도로 이양된 후 과학중점학교 지정운영현황을 별도로 취합하고 있지 않아 현재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문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시·도로 이양되기 전까지의 현황에 대해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www.kofac.re.kr)-성과/지식/홍보-KOFAC성과관리 통계데이터-2021년 과학창의 통계일람에서 '과학 교육사업(2022-04-08)'을 다운로드하여 파일을 열면 p.75에서 과학중점학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4.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 증빙 자료 제출 관련



질의요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입니다. 학교의 공지에 따라 1학기 초 진단서를 제출하여 질병 결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빙서류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3-09-06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에서 민감군 학생이 결석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견서 또는 진단서는 학기별로 제출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15. 전입학 시 전출일과 전입일 처리 관련



질의요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교용)〉 p.40 ④기타 다. 전출일과 전입일은 연 중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한다. 【기재방법】○금요일까지 전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로, 전입일은 월요일로 함. 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전입일과 자퇴일은 휴일이 아닌 평일에만 가능하고 전출일은 휴일에도 가능한 것으로 읽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출일을 금요일로 정하면 전입일을 토요일, 일요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9-26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35 1. 제7조(인적·학적사항) 다.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입학,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교급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전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만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전·편입학 등의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초등학교·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확인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16.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기 교과서 주문 관련



질의요지

내년 초등학교 1, 2학년은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는 통합교과서명이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런데 2024학년도 1학기 교과서 신청 목록에 '바른생활, 즐거운생활, 슬기로운생활'로만 표시되어 있어 교과서명이 다시 옛날처럼 '바른생활, 즐거운생활, 슬기로운생활'로 돌아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이스 상의 구매목록에서도 '바른생활, 즐거운생활, 슬기로운생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2023-09-12 전화문의(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

- 현재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 교과서는 개발 중으로 교과서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서를 주문할 때에는 '바른생활, 즐거운생활, 슬기로운생활'에서 하되, 구매 목록이 1학년 1~4, 2학년 1~4로 표시되고 있어 각각 1학년에서 1~4(총 4권), 2학년 1~4(총 4권)를 모두 구매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17.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사용지도서 파일 다운 방법



질의요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국어 과목의 교사용지도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신내용

2023-05-01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

-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는 (주)미래엔에서 출판을 하고 있으며 교과서 출판사가 교사용 지도서도 함께 발행을 합니다. (주)미래엔에서 운영하고 있는 엠티쳐(<https://mid.m-teacher.co.kr>) 에서 초등학교 교사용 국어전자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회원가입 후 GPKI 인증을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주)미래엔(고객센터 1800-88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

18. 초등학교 입학 관련	42
19. 교육급여 사용처 제한	43
20. 교육급여 바우처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44
21. 퇴근시간 이전에 교과 담당교사가 방과후 수업에 강사로 참여 가능한지 궁금해요	45
22. 다문화가정 돌봄 혜택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46
23.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47
24.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게 연장해 주세요	48

18. 초등학교 입학 관련



질의요지

2024년 초등학교 입학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2023-04-07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에 따라 6년의 초등 교육과 3년의 중등 교육으로 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1항 등에 따라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22일과, 3월 13일 출생신고 날짜 모두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보호하고 있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19. 교육급여 사용처 제한



질의요지

교육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5-17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23년부터 교육급여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우리부는 교육급여 바우처가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흥·사행업종 등에는 바우처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별 교육급여 집행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 교육급여 바우처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질의요지

교육급여 바우처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주세요

회신내용

2023-06-14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및 제60조의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라 신청,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보장결정은 시도교육청(학교)에서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교육청으로 전송하면,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한 학생들에 대해 급여 내용 등을 결정합니다. 이후 바우처 지급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해당 내용을 데이터화하고, 한국장학재단 및 카드사의 정보 확인 등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며 이로 인해 지급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우리부는 교육급여가 가능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4세대 나이스에서는 교육청에서 급여 내용을 결정하면 즉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정보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부는 수급자분들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교육급여 신청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 신청결과 확인, 바우처 잔액 및 사용 내역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21. 퇴근시간 이전에 교과 담당교사가 방과후 수업에 강사로 참여 가능한지 궁금해요



질의요지

퇴근 시간 이전, 정규 수업이 끝난 뒤에 본교 교과 담당 교사가 강사로 참여하고 수당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3-8-24(책임교육정책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

-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2023.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제작·보급하였습니다. 본 길라잡이(p16)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퇴근 시간 이전 정규수업시간이 끝난 뒤 방과후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을 말씀드립니다.

22. 다문화가정 돌봄 혜택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질의요지

다문화가정 돌봄 혜택 제공이 확대되기를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2023-10-19(책임교육정책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

-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담임교사 추천 학생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학생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를 개정하고 있으며, 24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초등돌봄교실 입실 우선순위 및 학생 선정 방법은 학교의 수요 및 공급 여건,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3.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질의요지

저출산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를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2023-10-20 (책임교육정책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

- 우리부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 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기 강좌를 추가 개설하고, 운영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초과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1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입학 초기(3월, 최대 1년) 놀이·체험 중심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프로그램, AI·코딩·빅데이터 등 미래형 신수요 및 체육·예술 등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부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17개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게 연장해 주세요



질의요지

초등돌봄교실을 2학년부터 3학년도로 확대 운영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2023-11-07 (책임교육정책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 대상 학년을 초등 1~2학년 위주에서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학부모의 수요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학년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부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23.1월)하고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24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침·저녁·틈새 돌봄 등 탄력적인 돌봄 운영으로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 수준 높은 방과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복지-전화문의

25. 유급생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 여부	50
26. 과령자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 여부	51
27. 특수학교 전공과의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대상기관 여부	52
28. 난민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 여부	53
29. 보호치료시설 입소 시 교육급여 보장 중지 여부	54
30.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 시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55
31.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를 수령하기까지의 시간	56
32. 교육급여 바우처 대리 수령 및 현금 지급 가능 여부	57
33. 교육급여 자격 중지 시 환수 여부	58
34. 교육급여 자격 중지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가능 여부	59
35. 교육급여 운영 방안에 안내된 용어 '전송'의 의미 관련	60
36.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더라도 별도로 우편으로 보내주는지 여부	61
37. 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이 아닌 부모의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여부	62
38. 세대원의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여부	63
39. 외국인일 경우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여부	64
40. 온라인 취학통지서 재교부 방법	65
41.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기간 경과 시 취학통지서 수령 방법	66
42.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취학통지서 재교부 가능 여부	67
43. 온라인 취학통지서로 배정받은 학교를 다른 학교 바꿀 수 있는지 여부	68
44. 조기입학, 입학연기 시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여부	69
45. 입학연기 신청을 철회하고 취학을 요청하는 경우	70

25. 유급생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 여부



질의요지

제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며, 질병으로 인해 자주 결석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가 내년에도 6학년을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아이가 내년에 6학년을 다시 다니게 되더라도, 현재 받고있는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5-15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급여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교육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급에 의해 1년을 더 다니게 될 경우 교육급여 대상에서 제한한다고 하는 단서조항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26. 고령자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 여부



질의요지

교육급여를 신청하러 오신 민원인의 나이가 47세이며,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과정 3학년에 재학 중인 분입니다. 소득조사 결과 요건이 적합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3-03-13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하는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교육급여 대상 학교에 포함됩니다. 또한 교육급여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교육감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 해당 학교가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인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시도교육청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27. 특수학교 전공과의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대상기관 여부



질의요지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도 교육비와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나요? 1978년생이신 분이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이라며 교육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회신내용

2023-03-06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특수학교 전공과는 특수학교 내에 설치된 직업교육과정이므로, 교육비와 교육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교육비와 교육급여 대상은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28. 난민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 여부



질의요지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F2비자를 소지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경우에도 교육급여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신내용

2023-10-26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난민법」 제32조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본인이 신청할 경우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관할 지역의 교육청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보호치료시설 입소 시 교육급여 보장 중지 여부



질의요지

교육급여를 받는 아동이 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할 경우, 교육급여 지급중지를 해야 하나요?
자격중지를 해야 하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2-11-24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교육급여 보장 중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30.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 시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질의요지

교육비 교육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학생과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릅니다.
학생과 부모 중 누구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3-04-10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교육비와 교육급여 둘 다 학생과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어느 곳에서도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31.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를 수령하기까지의 시간



질의요지

한국장학재단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신청하였습니다. 선불카드를 받기까지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3-04-11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교육급여 선불카드를 받기까지는 심사·승인으로부터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게 되면 1~2일 내에 심사·승인이 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일과 심사·승인일 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도 최대한의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선불카드를 수령하기까지는 한 달보다 일찍 도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최대한 2주안에 선불카드가 발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2. 교육급여 바우처 대리 수령 및 현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요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하는 분이 연고가 없고 법정대리인도 없는 장애인시설수급자인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워 한국장학재단에 문의를 하니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경우 어디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2023-03-17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3에 따른 급여의 대리 수령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급여대리수령 신청서를 접수받아 승인을 하면 예외적으로 현금이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33. 교육급여 자격 중지 시 환수 여부



질의요지

3월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여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했었는데 소득변동이 있으면서 6월에 교육급여 자격이 중지되었을 경우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한 금액에 대해 환수를 해야 하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3-06-19 전화문의(교육복지정책국 교육복지정책과)

-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시·도교육청)> p.39 라. 자격 중지 시 정산을 보면 교육활동비, 교과서대, 입학금은 중지일 이전의 급여지급액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는다. 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업료의 경우에는 결정된 달의 다음 분기부터 교육급여의 지원을 중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중 고교학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급여가 중지된 때부터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해당 학년의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4. 교육급여 자격 중지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가능 여부



질의요지

3월에 교육급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으나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소득변동이 발생했다며 6월에 교육급여 자격 중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격 중지 통보 이후인 8월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3-08-02 전화문의(교육복지정책국 교육복지정책과)

-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p.34의 6)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한국장학재단의 내용을 보면, '보장결정일과 실제 지급일(교육청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지급 의뢰를 한 날짜) 사이에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보장 결정이 되었으므로 교육활동지원비의 신청 및 사용기간을 보장' 이라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5. 교육급여 운영 방안에 안내된 용어‘전송’의 의미 관련



질의요지

교육급여를 신청하였다가 신청을 취소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육급여 운영 방안을 보면, 교육급여 신청을 취소한 경우 반영 방법에서 '조사자결정정보 전송 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송은 나이스로의 전송을 말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교육급여 신청인에 대해 적합/부적합 판정한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4-25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p.40 마. 수급권자가 급여 신청을 취소한 경우 반영 방법으로 조사자 결정정보 전송 전, 전송 후에서의 '전송'이라 함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로의 전송을 의미합니다.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시·군·구로부터 적합 판정대상자를 전송받아 학교가 학적정보 등을 대조하여 최종적으로 보장결정하는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36.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더라도 별도로 우편으로 보내주는지 여부



질의요지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등기우편으로는 오지 않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2022-12-19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취학통지서는 시범운영 중으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셔도 등기우편으로도 취학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7. 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이 아닌 부모의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여부



질의요지

취학통지서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세대주로 있고 아이는 세대원으로 있으나 아버지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여 세대주도 세대원도 아닙니다. 이 경우 아버지를 보호자로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2-12-05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주민등록상 내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보호자로 변경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38. 세대원의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여부



질의요지

세대주가 할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세대원인 부모가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 출력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2022-12-02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기본적으로는 세대주가 출력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보호자 변경을 통해서 출력을 할 수는 있으나 보호자 변경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39. 외국인일 경우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여부



질의요지

외국인도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2022-12-09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외국인은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입학은 인근 학교 및 관할 교육청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온라인 취학통지서 재교부 방법



질의요지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취학통지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정부24에서 재발급을 시도했지만 기간이 지나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2023-01-03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취학통지서를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2월 20일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41.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기간 경과 시 취학통지서 수령 방법



질의요지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2022-12-16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온라인 발급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2월 20일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42.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취학통지서 재교부 가능 여부



질의요지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의 취학통지서 재교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3-09-11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취학통지서 발급 업무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예전 취학통지서 재교부 가능 여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온라인 취학통지서로 배정받은 학교를 다른 학교 바꿀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았는데, 취학통지서로 배정받은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키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학교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2022-12-13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학교로의 입학을 원하는 경우, 원하는 학교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44. 조기입학, 입학연기 시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여부



질의요지

2023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아이가 건강상의 이유로 2024년에 입학하게 하고 싶습니다. 아직 취학통지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2022-11-23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는 취학연도의 전년도 12.31.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45. 입학연기 신청을 철회하고 취학을 요청하는 경우



질의요지

주민센터입니다. 해마다 12월 말까지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연기를 신청한 학생이 신청을 철회하고 배정받았던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내용

2023-04-03 전화문의(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 입학연기 철회는 원래 배정받았던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심의 결과 '취학'으로 결정되면 학교는 교육장(교육지원청)에게 보고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 해당 학생의 취학 결정을 알립니다. 그 후 주민센터는 이 공문을 근거로 (다음해) 취학 대상 명부에서 해당 학생의 명단을 삭제하며 '취학' 상태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학부모)은 원 배정교에 연락하여 입학연기 신청을 철회하고 취학 의사를 전달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학생건강, 안전

46.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문의	72
47. 독감 환자(학생) 격리 기간에 대한 질의	73
48. 학생 마약예방 교육 관련 질의	74
49.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문의	75
50. 유치원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요청	76
51. 지진안전교육 추진현황	77
52. 재난대비 행동요령 도서 보급 및 비치 요청	78
53. 학교시설 안전점검 관련	79
54. 교육시설안전 인증 제도 관련	80
55.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평가 관련	81
56.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관련	82
57. 교육시설법에 따른 사전기획 관련	83
58. 학교복합시설 관련	84

46.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문의



질의요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 및 확인적 요인 분석 유무, 특수학교와 특수 학생이 검사대상이 들어간 이유, 검사지 60번 문항(자살 관련)에 대한 보완 요구, 학교 내 관리체계 구축 시 업무 총괄을 부장교사 이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2023-04-24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 전문기관 연계 등 효과적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선별검사(screening test)입니다.
- 본 검사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전문가가 주도한 연구를 거쳐 만들어진 검사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포함한 타당도 검사와 신뢰도 검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 본 검사는 「학교보건법」제7조에 의해 특수학생도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신체적, 인지적 문제 등으로 인해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검사의 주체인 학교장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대상자 제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60번 문항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에 '예'라고 응답하고 신뢰도 문항(40번, 62번)의 합이 '5점'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의 경우, 학교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선관리군'에 포함시켜 상담, 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학생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 검사결과 학교 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부장교사 이상을 업무 총괄로 지정하고 있으며 특정 업무 담당자에게 업무 집중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보건, 상담, 담임, 생활 지도, 기초학력지원 등)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를 확립하도록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학교별 인력 여건이 다를 수 있어 학교장이 구성원의 의견을 토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47. 독감 환자(학생) 격리 기간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독감 환자(학생) 격리 기간에 대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이 있는지, 격리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5-12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학생이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학교보건법」제8조(등교중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학교의 장은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등에 대하여 등교(등원) 등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우리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시설별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용)」을 마련하여 '22.12.8(목)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동 관리지침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 등원, 출근 중지 기간은 "해열제 없이 정상 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단,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 함)"이며,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8. 학생 마약예방 교육 관련 질의



질의요지

학생 마약예방교육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2023-04-24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최근 우리 사회는 마약사범 증가추세에 있어 검찰청, 경찰청, 외교부, 복지부, 교육부,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약 근절을 목표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교육은 「학교보건법」,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식약처, 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하여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게시처 : 학생건강정보센터, www.schoolhealth.kr)를 개발하여 각급학교에 제공하고 있으며, 법무부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가인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교육부는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 담당 교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원 대상 연수과정을 개발하여 '23.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마약 예방 관련 자료를 각 가정에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9.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문의



질의요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 후 남은 잔반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5-12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를 지도 및 관장하는 시도교육청에 매년 지침을 안내하여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단위학교에서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근원적으로 잔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식단계획 단계부터 영양소기준에 맞는 적정량의 식재료 구매 및 조리·배식,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0. 유치원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요청



질의요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 급식도 방사능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9-13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최근 학교급식 수산물 사용현황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유치원에는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현재, 모든 국·공립 유치원 및 원아수 50명 이상 모든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이 적용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식재료의 원산지"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에서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을 위하여 해역에서부터 생산-유통까지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식재료만 유통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방사능 안전관리체계(해수부, 식약처, 지자체) : 해양 모니터링(국내해역 200정점 방사능 검사), 생산단계 검사(위판장, 양식장 등), 유통단계 검사(마트, 시장 등)
- 뿐만 아니라 '13년부터 모든 교육청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교육청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향후에도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 지진안전교육 추진현황



질의요지

지진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부 지진안전교육 추진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3-05-23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

- 모든 학생은 유치원 단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을 포함한 학교안전 교육을 매년 51차시 이상 받고 있으며, 지진안전 관련 내용은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학기별 2회 이상 연간 6차시 이상 실시되고 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1호)

- 우리부는 학교의 체계적인 지진안전교육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발달단계 특성을 반영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EBS 협업 안전교육 영상콘텐츠(안전채널e)를 개발·보급하고, 유관기관의 안전교육자료를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학생안전체험시설 건립·운영을 지원하여 교실환경의 지진체험시설에서 지진 발생 시 대처방법과 실외 대피 방법 등의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진 체험시설을 갖춘 체험차량과 안전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지진 발생 시, 학교 안팎의 위험요인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발굴·개선하는 「학교 안전매핑 동아리」와 지진, 화재 등의 재난상황에 대한 모의 대피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어린이재난안전훈련」 등을 통해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참여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2. 재난대비 행동요령 도서 보급 및 비치 요청



질의요지

재난 현장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행동요령 도서를 비치해주세요.

회신내용

2023-08-04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

- 우리부는 학교 현장에서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사고에 대한 학생행동요령과 위기 수준에 따라 학교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 또한, 재난 발생에 따라 학교 구성원 및 학교 시설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동 매뉴얼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행동요령도 주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3. 학교시설 안전점검 관련



질의요지

3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학교시설물로,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상하반기 매년 2회씩 점검을 받고 있는데, 교육시설법에 의한 안전점검도 받아야 하나요?

회신내용

2023-01-09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안전팀)

- 교육시설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정기점검은 건축, 토목분야에 한정하고 있고 교육시설법에 의한 정기점검은 건축, 토목분야 외 전기, 설비, 승강기 등 교육시설 전체의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상세 점검 분야 및 점검 내용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별지2호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교육시설법에 따른 안전점검 기간 내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정기점검 실시 시 건축, 토목분야는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 외 분야는 별도의 점검을 실시하여야만 교육시설법에 따른 해당 건물의 안전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4. 교육시설안전 인증 제도 관련



질의요지

교육시설안전 인증 취득 및 심사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5-24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안전팀)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도는 일선 교육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속 가능한 안전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법령 등에 근거한 안전기준 충족 여부 등을 검증하여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내 및 실외 환경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심사는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설안전·실내환경안전·외부환경안전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교육부 고시)」에서 정하는 분야별 인증심사기준은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학생 및 교직원 등 교육시설 이용자의 신체 및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시설 개선 시 우선순위 선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55.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평가 관련



질의요지

건축물 해체공사 시,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는 것으로 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성평가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7-25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안전팀)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 건설공사 중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 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안전에 미치는 영향거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평가 대상 건설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56.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관련



질의요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6항의 “이해관계인” 에
“그 시행지 밖 인근 지역 주민”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10-11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과)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은 감독청이 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시행지 안에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으면 그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지 안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계획 승인 권한을 가진 감독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7. 교육시설법에 따른 사전기획 관련



질의요지

민간에서 사업을 완료한 후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교육시설법에서 정하는 사전기획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5-18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과)

- 사전기획 대상 여부를 최종 소유가 아닌 발주 시점(교육시설의 설계 전)으로 보며 민간이 건축물의 설계·시공을 완료한 이후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교육청의 재정지원이 없는 사립학교와 유사하게 보아 사전기획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민간이 설계·시공을 완료한 이후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사전기획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사업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58. 학교복합시설 관련



질의요지

초등학생 및 지역주민이 수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수영장을 건립한 경우, 이것도 학교복합 시설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건립비는 교육청 부담,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예정

회신내용

2023-08-24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과)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 또한, 학교복합시설법 제2조(정의)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등의 공공 체육시설을 동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 또는 동의하여 설치·운영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시설의 경우 학교복합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건강, 안전-전화문의

59.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시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의무 제출 여부	86
60.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 세균성이질 필수 진단항목 여부	87
61. 졸업자의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가능 여부	88
6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사유	89
63. 교육부 발행의 학생 비만 관리 및 예방 교육 자료 열람 방법	90
64. 초등학생의 학교안전교육 중 심폐소생술교육 운영 방법	91

59.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시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의무 제출 여부

질의요지

학교급식에 축산물 납품 시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를 학교와 유치원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9-25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장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축산물 거래 시 여러 개의 축산 관련 증명(확인)서를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로 통합하고,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학교 및 유치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협조 요청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 유통업체에서 축산물 거래 시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인 '등급판정 확인서, 도축검사 증명서, 친환경 인증서, HACCP 인증서, 축산물 이력정보' 대신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를 보관하는 등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는 서류 제출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통합증명서를 제출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한 규정은 없어 납품 업체에서 학교에 통합증명서가 아닌 「축산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의 거래 서류를 기존과 같이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0.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 세균성이질 필수 진단항목 여부

질의요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보건증과 관련하여 질의 하려고 합니다.
건강진단 항목이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이렇게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세균성이질도 필수 진단항목인가요?

회신내용

2022-11-25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검진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준용합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별표) 건강진단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입니다. 해당 규칙에서 정한 3가지 외 검사 항목의 진단과 관련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졸업자의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가능 여부



질의요지

저는 2023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당시 건강기록부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3-09-04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제14조에 따르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계속적으로 기록·관리 해 온 학생건강기록부 출력물(종전의 건강기록부를 포함한다)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전산매체에 이를 저장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후 5년까지는 해당 학교를 통해 학생건강기록부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6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사유



질의요지

학교에서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학생들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예방접종 안내문을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3-03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학교보건법」 제10조는 초·중학교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시스템은 예방접종 업무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의하여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학교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가 접종이력을 자동으로 입력관리 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 학교생활은 단체생활로, 단체생활 시 감염병에 노출되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할 때 필수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학교장은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필요시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부모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3. 교육부 발행의 학생 비만 관리 및 예방 교육 자료 열람 방법



질의요지

교육부에서 제작한 초·중·고 각급학교용의 '학생 비만 관리 및 예방 교육자료'를 파일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2023-05-18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

- 초·중·고 각급학교용의 '학생 비만 관리 및 예방 교육자료'는 학생건강정보센터 (www.schoolhealth.kr)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4. 초등학생의 학교안전교육 중 심폐소생술교육 운영 방법



질의요지

인터넷에서 본 정보에 따르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육부의 지침인지, 그리고 초등학생의 학년별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1-16 전화문의(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서,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응급처치교육 영역에 포함되며, 유치원 단계에서는 응급처치 교육영역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교육내용 4가지 주제 중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모든 학교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의 운영 방법(이론교육, 실습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안전계획에을 세워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교원

65. 교원의 휴직 중 겸직 허가 관련	94
66. 가족돌봄휴직 운영 방안 관련	95
67. 방학 중 교원의 출근 여부 관련	96
68.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사전예고	97
69.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필요	98
70. 가족수당 세대주 요건 필요 여부	99
71. 학교 강사 경력 인정 여부	100

65. 교원의 휴직 중 겸직 허가 관련



질의요지

육아휴직 중 겸직(집필 활동)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2023-04-09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 26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복무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육아휴직 중 집필 업무의 겸직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아울러, 겸직허가의 기준은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소속기관장입니다. 귀하께서 육아휴직 중임을 감안할 때, 겸직 허가는 소속기관장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귀하께서는 겸직하려고 하는 직무의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를 소속기관에 제출하여 겸직 허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받으실 것을 안내 드립니다.

66. 가족돌봄휴직 운영 방안 관련



질의요지

‘개정 가족돌봄휴직’의 승인 조건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2023-07-19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정 가족돌봄휴직 운영 방안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족돌봄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합니다.
- 가족돌봄휴직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이유와 휴직기간동안 원래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돌봄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 금번 도입된 가족돌봄휴직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고 현장과 소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 방학 중 교원의 출근 여부 관련



질의요지

교원은 방학 중 근무를 해야하나요?

회신내용

2023-09-18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 방학은 학교의 휴업일로서 학생에 대한 학교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법령에 의한 교원의 휴무일은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원에게는 방학 중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근무장소인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연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방학은 학교의 휴업일이지만 교원의 휴무일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 신청을 하지 않고 연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출근해야 합니다.

68.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사전예고



질의요지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사전예고의 일정을 당길 수 있나요?

회신내용

2023-02-28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은 각 시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사전 공고 또한 각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교원수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사전예고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시험 3개월 전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조속히 공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9.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필요



질의요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권 침해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3-06-19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 우리 부는 아동학대 예방·지원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예방교육, 자료개발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학생, 교원 및 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아동학대 관련 절차 및 대응 방안 보완하였습니다.
-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를 과용하여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확대를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시도교육청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 시도, 교원단체·노조, 연구기관, 민간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6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며, 생활지도의 범위, 기준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5.25.)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교원이 생활지도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70. 가족수당 세대주 요건 필요 여부



질의요지

동생이 세대주인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족수당 받는데 괜찮은가요?

회신내용

2023-02-01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가족수당이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이때의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할 것과 해당 공무원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이에, 적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 귀하의 부양가족의 경우 동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가족수당은 같은 세대원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기 때문에 세대주일 것을 필수적으로 요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 학교 강사 경력 인정 여부



질의요지

초등학교 기초학력 협력강사로 근무할 경우 추후 중등임용되었을 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신내용

2023-03-13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간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40시간(12.3.1. 이후)을 기준으로 주당 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주당 실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12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3할을 인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며, 보다 구체적인 경력환산율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의 3호가목 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전화문의

72. 명예퇴직 교원의 병가 일수	102
73. 교육대학원 휴학 중 소속 학교에서 이수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인정 가능 여부	103
74. 특수교사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104
75. 학교현장실습기간 중 주말을 이용해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의 인정 여부	105
76. 교원임용시험에서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관련	106
77. 교원임용시험의 국가교육과정 출제 범위	107
78. 교육부 홈페이지의 교원양성기관 현황 중 교육대학원에서 자격종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의 의미	108

72. 명예퇴직 교원의 병가 일수



질의요지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1년을 근무하면 유급 일반병가 일수가 60일인데,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6개월을 근무하게 될 경우 유급 일반병가일수가 30일로 줄어드나요?

회신내용

2023-04-07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2항에 의거 연도 중 퇴직하는 교원의 연가일수는 해당 교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하지 아니한 기간을 공제하여 처리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 ÷ 12(월) × 해당연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학교장)은 소속 교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하거나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연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가와 달리 병가는 연도 중 퇴직하는 교원인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주어진 전체 병가일수 내에서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3. 교육대학원 휴학 중 소속 학교에서 이수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인정 가능 여부

질의요지

대학에서 교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에 있는 현직 교원이 조만간 대학을 휴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교원이 교육대학원을 휴학하고 있는 동안 재직 중인 학교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이수할 경우 이 이수증을 교육대학원 무시험검정기준 요건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2023-05-23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이 소속 학교(또는 교육청)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응급처치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의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반드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실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교육대학원 '휴학 중'을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학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대학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74. 특수교사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질의요지

저는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 자격 취득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p.55를 보고 있는데요, 표시과목 관련 38학점에 특수교육교육과정 7학점 이상 이수가 포함된다는 것인지, 38학점 외 별도로 7학점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2023-02-09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 특수교사 중등의 경우 표시과목 관련 38학점에 특수교육교육과정 7학점 이상 이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127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보시면, 전공과목 구분에서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에서 '(중등):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을 포함'으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소속 대학에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5. 학교현장실습기간 중 주말을 이용해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의 인정 여부

질의요지

교원자격검정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학교현장실습기간 중에 주말을 이용하여 교육봉사활동을 하였는데 대학에서는 학교현장실습기간 4주 동안에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은 교육봉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교현장실습을 한 기관과 교육봉사활동을 한 기관이 서로 다르고, 평일이 아닌 주말을 이용하여 교육봉사활동을 한 것인데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11-01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 대학은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판단 및 결정은 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해당 대학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 교원임용시험에서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관련



질의요지

교육부에서 교원임용시험을 볼 때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한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도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3-02-02 전화문의(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교육부는 교원임용시험 1차 시험과목의 하나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되 성적인정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023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공고를 할 경우 해당 규칙은 2023년 3월 1일 이후 치러지는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하며, 3급 이상의 인증을 받은 것이라면 취득 연도와 상관없이 한국사 과목을 대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77. 교원임용시험의 국가교육과정 출제 범위



질의요지

올해 하반기에 있을 2024학년도 중등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22년 12월에 2022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였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있을 2024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교육과정 출제범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6-28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교육과정 출제범위는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문항의 교육과정 출제범위는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12.22.) 내용까지입니다.

78. 교육부 홈페이지의 교원양성기관 현황 중 교육대학원에서 자격종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의 의미



질의요지

초등교사의 경우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와 교육대학원이 어떤 곳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있는 '2021년 교원양성기관현황'에서 교육대학원 시트를 보면 자격종별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공란들이 있습니다. 이 공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초등 정교사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대학원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2023-02-01 전화문의(책임교육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 먼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설치 승인받은 교육대학의 대학원으로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4곳이 있습니다. 2021년 교원양성기관현황의 교육대학원 시트에서 자격종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곳은 재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초등 정교사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초등교육과가 설치된 교원양성기관은 교육대학원이며 교육대학원 외 이화여대, 제주대, 교원대에 초등교육과가 설치되었으며, 현황 자료에서 확인되는 부경대는 현재 초등교육과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III

고등교육

2023년도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대입제도, 장학 등

1.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관련	112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관련	113
3.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확대 요청	114
4. 지역인재 선발 제도 및 지역인재 전형 질의	115
5. 군 휴학 시 등록금 반환 및 이월	116
6.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118
7.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전월세보증금의 재산 반영 방법	119

1.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관련



질의요지

현재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를 시범시행 중인데, 온라인 접수 가능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회신내용

2023-08-25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국에서 약 50만 명에 가까운 수험생들이 대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시험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에 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45조에 따라 수능 출제, 채점, 응시수수료의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되어 있고,
- 각 시·도교육청은 수험생들이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험생 본인이 직접 출신학교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수능 대리응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본인 확인, 출신학교에서의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점검으로 기재 오류 방지, 수능시험 응시자격 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23학년도 수능에서 온라인 사진 입·출력을 포함한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시스템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적용 지역을 지속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관련



질의요지

재외국민 특별전형(12년 특례)에 지원할 예정인데 해외 학교의 방학 기간에 한국을 방문해도 12년 특례 지원자격이 충족되나요?

회신내용

2023-03-31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

-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립 및 발간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에서는 전 교육과정 이수자(12년 특례) 전형의 경우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방학 기간에는 국내에 체류하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등에 따라 대입전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의 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귀하의 자녀가 지원하시고자 하는 대학 입학처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확대 요청



질의요지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을 놓여준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전형과 같이 확대해주세요.

회신내용

2023-06-13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

- 「고등교육법」제34조의8제1항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통합전형에 대하여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 모집인원,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회 균형선발비율"이라 한다)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제34조의5제4항의 대학입학전형시행 계획에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는 2022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6를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각 대학의 장은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한 사회통합전형을 일정 비율(10%)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여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지역인재 선발 제도 및 지역인재 전형 질의



질의요지

- ‘27학년도 대입 시 학생이 고등학교 3년을 해당 지역에서, ’28학년도 대입시부터는 중·고등학교 6년을 해당 지역에서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고등학교 3년만 해당지역 고등학교를 졸업 후, 재수를 해서 ‘28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경우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6-07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

- 지방대학의 장은 2023학년도부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역 범위 내의 학생을 최소입학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합니다.
-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학생 선발의 요건은 ①‘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를 졸업할 것’, ②‘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 ③‘재학기간 내에 해당학교 소재한 지역 거주할 것’이며, 위 요건 조건 모두를 만족한 학생이 선발 대상이 됩니다.
- 위의 요건은 「지방대육성법」 개정(2021.3.23.)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2028년 대입)부터 적용되게 되므로, 2022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5. 군 휴학 시 등록금 반환 및 이월



질의요지

군 휴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관련 법 상 휴학 시 학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등록금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등록금을 반환 받지 않고 이월하고 싶습니다. 정말 법에서 휴학 시 등록금을 반환해야만 한다고 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3-13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대학은 아래 등록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 문의주신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는 경우'는 법률 상 등록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학에서는 해당 학기 개시일과 반환 사유 발생일을 비교하여 아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 또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의거,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금 이월 가능 여부는 각 대학에서 학칙 등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6.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질의요지

대학별로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이 있고, 불가능한 대학이 있습니다. 전 대학에서 카드 결제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2023-02-20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

-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현금 또는 카드에 의한 결제로 등록금을 납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금 징수는 대학이 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부가 모든 대학에 등록금 카드 납부제를 의무화하도록 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드 납부와 유사한 효과가 있고 수수료 부담은 없는 등록금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7.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전월세보증금의 재산 반영 방법



질의요지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은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회신내용

2023-06-15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

- 임차보증금은 타인의 주택이나 점포 등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보증금을 지급하신 분(임차인)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임대보증금)은 향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부채로 인정됩니다.



대입제도, 장학 등-전화문의

8. 수능 응시원서 작성 시 졸업연도 표기	122
9. 대입 실기고사 응시 중에 수험생이 다쳤을 경우 보상 관련	123
10. 고교 추천전형의 추천자 명단 변경 가능 여부	124
11. 농어촌특별전형 지원 자격 관련	125
12. 체육특기자전형 시 학년별 경기실적 반영 비율	126
13. 검정고시생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 여부	127
14. 대학 입학금 징수 관련	128

8. 수능 응시원서 작성 시 졸업연도 표기



질의요지

2019년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보통 2022년 2월에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2021년 12월에 졸업식을 하였는데요, 이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출신고등학교의 졸업연도를 쓰도록 되어 있어 2021년 12월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나이가 같고 같은 해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다른 학교의 졸업생들은 2022년 졸업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정작 수능시험을 응시할 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스럽습니다.

회신내용

2023-08-29 전화문의(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

- 해당 지역의 여건 및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각 학교는 학사일정을 세우게 되므로 12월에 졸업식을 하기도 하고, 이듬해 1월이나 2월에 졸업식을 하기도 합니다. 수능 응시원서에 졸업학년도로 되어있지 않고 졸업연도로 되어 있으므로, N수생의 수능응시원서 작성 시 졸업연도는 해당 응시자의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제 졸업연도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9. 대입 실기고사 응시 중에 수험생이 다쳤을 경우 보상 관련



질의요지

자녀가 대입에서 실기고사로 무용을 하다가 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겨울이라 바닥도 차고 단단해져서인지 골절을 입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입시험의 실기고사에 응시 중인 수험생이 안전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신내용

2023-02-23 전화문의(인재선발제도과)

- 대학은 학교안전공제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된 대학이라면 공제회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으나 해당 대학이 공제회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대학 자체적으로 가입된 보험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안전사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소속 대학으로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10. 고교 추천전형의 추천자 명단 변경 가능 여부



질의요지

저는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A대학교에 고교추천을 받았지만, 이를 포기하고 B대학교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A대학교 고교추천자 명단을 이미 교육청에 제출했다며 B대학교로의 추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추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3-09-11 전화문의(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

- 고교추천전형의 학교장 추천 대상자 명단은 각 고등학교의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원서접수 대행사인 진학사, 유웨이어플라이 등의 학교장 추천시스템은 추천서 접수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나, 수정페이지가 보이지 않거나 기간이 아니라고 나오면 해당 학교나 원서접수 대행사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제출된 명단 변경에 대해서는 소속 고등학교나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농어촌특별전형 지원 자격 관련



질의요지

저희 가족은 농어촌특별전형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는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1학기 후, 미국으로 1년간 유학을 다녀왔고, 돌아와서 중학교 3학년 2학기부터 다시 입학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모집 요강을 살펴본 결과, 농어촌 거주 기간의 12년 연속성에 대한 기준이 대학교마다 다릅니다. 우리 아이의 경우처럼 잠시 해외 유학을 다녀온 경우, 농어촌 거주 연속성의 예외 사항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2023-03-03 전화문의(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

- 각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9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매년 수립·발간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농어촌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는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의 연속성에 대해서 최소한의 요건만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사항에서 명기하고 있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들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입학관리처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12. 체육특기자전형 시 학년별 경기실적 반영 비율



질의요지

저희 자녀는 고등학교 운동부의 학생 선수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체육특기자 자격을 얻으려면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고등부 경기에서 4강 이상의 성적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부상으로 2학년, 3학년 때 경기에 참가하지 못해 1학년 때의 성적도 체육특기자 자격 취득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6-07 전화문의(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

- 체육특기자전형 시 지원자의 경기실적 반영 비율은 대학별로 상이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경기실적이 없더라도 고1, 고2 경기실적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학별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대학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 체육특기자 학생 선발에 관한 대학의 입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육특기자대입포털(info.kusf.or.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체육특기자대입포털(02-707-376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검정고시생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 여부



질의요지

202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역인재전형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력을 지방에서 취득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학력을 검정고시로 취득한 경우 지역인재전형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학력은 검정고시로 취득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지역의 정규 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8-18 전화문의(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

- 지방대학의 장은 2023학년도부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역 범위 내의 학생을 최소입학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합니다.
-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학생 선발의 요건은 ①‘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를 졸업할 것’, ②‘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 ③‘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 소재한 지역 거주할 것’이며, 위 요건 조건 모두를 만족한 학생이 선발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학교를 졸업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정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 학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14. 대학 입학금 징수 관련



질의요지

2023학년도부터 대학 입학금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OO전문대학교 국비장학생으로 합격했는데, 입학금 관련 진행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12-02 전화문의(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법률 제16679호, 2019.12.3.〉 제3조(입학금 징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이후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2023학년도 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대학(원) 운영 등

15. 서울 소재 대학을 지방이전 요청	130
16.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대학기본역량진단 관련 질의	131
17. 지방대육성법의 지방대학에 특별법에 따른 대학 (경찰대, KAIST 등)도 포함되는지 문의	132
18. RISE와 RIS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	133
19.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134
20. 국립대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135
21. 회계연도 말 예비 지급 관련	136
22. 강사로 지급 기준 관련	137
23. 학교법인 임원 선임 관련	138
24.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관련	139
25. 사립학교법 제23조에 따른 이사장의 겸직금지 범위 질의	140
26. 학교법인 임원의 이사회 회의록 서명 방식 질의	141
27. 대학원 연구과정 연구과정 학생의 학점인정 가능 여부	142
28.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신설 관련 교원 자격	143
29. 대학원 동시 등록에 관한 사항	144

15. 서울 소재 대학을 지방이전 요청



질의요지

서울 인구 밀집 해소 등을 위해 서울 소재 대학을 지방 이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2023-02-17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규제혁신총괄과, 대학경영지원과)

- 국립대학의 이전은 대학 구성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와의 합의 등도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대학이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이전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립대학의 이전은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이며, 각 대학이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이전을 신청할 경우 우리부는 인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정부가 주도하여 수도권 대학을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립대학의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대학기본역량진단 관련 질의



질의요지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위해 특성화 대학을 추진한 모든 대학의 비특성화학과가 모집중지 및 폐과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2023-09-07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규제혁신총괄과)

-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대학의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를 지표로 설정하여 평가하였고, 2018,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대학의 발전계획 및 성과와 관련하여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의 수립·추진·성과'를 진단 지표로 설정하여 평가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특성화 대학들에서 비특성화 학과가 모두 모집중지 및 폐과처리되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17. 지방대육성법의 지방대학에 특별법에 따른 대학 (경찰대, KAIST 등)도 포함되는지 문의



질의요지

지방대육성법 제2조 지방대학에 특별법에 따른 대학(예.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상 KAIST)도 포함될 수 있는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재량사항으로 특수대학교도 지역인재 전형으로 포함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4-27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 제정(2014.1.28)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방대육성법」제15조 제3항(대학의 입학기회 확대)에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대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의미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학교 및 각종학교 제외)입니다.
- 판례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의 법적지위는 공공단체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헌법재판소 판례, 2021헌마686)하고 있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지방대육성법」에서는 지역인재 선발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 그 입학전형과 관련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18. RISE와 RIS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2023년에 새롭게 시범운영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RISE)' 정책과 기존에 실행하고 있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정책의 차이점이나 새롭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2023-06-26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으로 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육성하여 '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RISE는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전 시·도에서 도입·운영 될 예정으로, 기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지역과 연계성이 있는 RIS, LINC 3.0, LiFE, HiVE 등을 통합하여 지역주도로 대학을 지원하게 됩니다.
- RISE는 RIS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보완하여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였으며, RISE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 중심 사업계획 및 운영으로 지자체 등의 역할 제한, 소수의 핵심분야에 한정된 지역인재 양성, 범부처 또는 지자체 사업과 연계 어려움

구분	RISE 주요 특징
추진체계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지원계획(RISE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중심으로 사업 추진
정책영역	지역혁신, 산학협력, 대학평생교육, 직업교육, 취·창업 등 지역연계 가능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대학 지원
지역범위	광역지자체 단위로 운영하되, 지역 간 적극적 협력 유도 예정
성과관리	지역별 RISE 계획수립에 따라 정주, 취·창업, 기술이전 등 지역과 연계된 사항으로 성과관리 추진(지자체, 교육부)

19.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질의요지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회신내용

2023-10-25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과기정통부, 고용부, 산업부 등 범부처와 협력하여 작년 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 본 방안은 혁신융합대학(혁신공유대학), SW중심대학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디지털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디지털 등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계약학과 모집 정원 한도를 확대하는 등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첨단분야 전공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과 함께, 4단계 두뇌한국 사업을 통한 신산업분야 신진 연구인력 육성,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전문 분야별 대학원의 설치 운영을 통한 연구개발인력 양성 지원 등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 정보교육 강화 및 정보 교원 확충 등 디지털 교육 저변 확대를 통한 전 국민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주요 핵심 정책의 진행 상황을 반분기마다 파악하여 부총리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본 방안의 구체적 내용과 핵심 관리과제의 추진 상황은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 소식- 보도·설명·반박-보도자료]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교육부는 범부처와 협력하여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0. 국립대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불용품의 양여)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국립대학교가 해당되나요?

회신내용

2023-05-31 (운영지원과)

- ‘국립대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관할 기관으로서 물품관리법 제8조(관리기관) 및 제9조(물품관리관)에 따른 ‘국가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21. 회계연도 말 여비 지급 관련



질의요지

2022. 2. 28. 출장비를 2023년 3월에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2023-04-17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재정과)

- 「국립대학회계법」제11조에 따라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2월말에 종료되며,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이전 회계연도 기간의 출장비를 다음 회계연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여비는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개산금(概算給)을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속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32조(지출의 특례) 지출 시에는 선금급 및 개산금(概算給)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개산금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직행수행경비

22. 강사료 지급 기준 관련



질의요지

외부강사 1명이 오전 2시간(A 내용), 오후 2시간(B내용) 강의 시, 「2023학년도 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강사료 지급 기준(일반 강사1)에 따른 상한액(450천원)을 오전, 오후 각각 지급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2023-08-31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재정과)

- 「2023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강사료 지급 기준액 및 고려사항* 등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을 감안「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다.

23. 학교법인 임원 선임 관련



질의요지

현재 사립학교 법인은 임원 선임 시 관할청(교육부)에 '임원 선임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회신서' 등을 첨부하여 취임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안내 사항 : 「사립학교법」제22조, 학교법인 운영(임원) 업무 안내서(2023.06., 교육부)] 이와 관련하여 '임원 선임대상자'와 '결격사유 조회'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임원 선임대상자'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임원 선임을 의결한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개방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임원 선임대상자'는 2배수로 추천된 '개방이사 후보자' 전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 '임원 선임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확인 시점은 임원 선임 안전이 상정된 학교법인 이사회 개최 이전이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2023-10-19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경영지원과)

-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원 선임대상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법인 운영(임원) 업무 안내서에서 명시한 '임원 선임대상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에서 명시한 결격사유 조회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임원 선임을 의결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원 선임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확인 시점은 임원 선임 안전이 상정된 학교법인 이사회 개최 시점이 아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임원의 임기 시작일의 이전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인이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된 개방이사 후보자 전원이 아닌 이사회의 의결 이후, 임원 선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관련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소유 임야를 매수하고 싶은데,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7-28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경영지원과)

- 해당 임야를 매도(처분)하겠다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립학교법」 제16조)을 거쳐 학교법인이 관할청(대학의 경우, 교육부)에 처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사립학교법」 제28조), 학교법인이 처분을 신청한 이후 특이사항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허가 처리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매수자가 해당 임야의 매도 허가를 신청할 수 없음

25. 사립학교법 제23조에 따른 이사장의 겸직금지 범위 질의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에 따르면 이사장과 이사를 구분하여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의 겸직금지 내용을 적용받지 않아 사립학교 교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3-20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고등직업교육정책과)

- 학교법인의 임원은 「사립학교법」 제14조에 따라 이사와 감사로 구분되고, 그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되므로,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이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바, 관련 법령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해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사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므로,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으며, 해당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도 겸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26. 학교법인 임원의 이사회 회의록 서명 방식 질의



질의요지

학교법인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이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방식으로 회의록(회의조서)에 서명 또는 간서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3-20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고등직업교육정책과)

- 학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에 대해선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2항을 통해 임원이 자필로 서명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학교법인 임원이 이사회 안전에 대해 직접 본인의 발언과 의견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회의록(회의조서) 전자서명시 발생 가능한 문제(임원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회의록 작성 등)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안내드립니다.

27. 대학원 연구과정 학생의 학점인정 가능 여부



질의요지

대학원 연구과정(비학위과정) 학생이 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 후 석사학위과정 입학 시 학점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1-26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습니다.
- 더불어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외의 다른 학교나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 근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인정가능 학점 범위가 제한되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학칙으로 구성된 학점인정심의회를 거쳐야 함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28.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신설 관련 교원 자격



질의요지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신설 시 확보 교원이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3-27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

-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에 관하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관련 분야 교원 수, 교원의 강의 비율, 학칙으로 정하는 교원의 연구 실적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설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 및 매년 우리부에서 대학에 안내하고 있는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재 대학 교원의 자격요건은 석·박사 학위 소지 여부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일정 수준의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을 갖춘 자를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원자격은 해당 대학의 학칙 등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9. 대학원 동시 등록에 관한 사항



질의요지

두 곳의 대학원에 동시에 등록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4-20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

- 대학원의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6조에 따라 각 대학원이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적 관리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4조에 따라 각 대학(원)이 학칙으로 정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사항이며,
- 각 대학(원)이 이중학적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학칙 및 제규정에 따라 입학 및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원) 운영 등-전화문의

30. 부모가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	146
31.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 도입 여부	147
32. 대학 교직원의 성범죄에 따른 인사 조치 관련	148
33. 2022년 이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관련 가이드라인' 확인 방법 ·	149
34. 사립대학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	150
35. 대학생 현장실습생에게 명절비 지급 가능 여부	151
36.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학교 주간수업 병행가능 여부	152
37.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 확인 방법	153
38.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표준 매뉴얼 열람 방법	154
39. 개인사업자의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생 입학 자격 요건	155
40.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 시 제출 서류	156
4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전과 가능 여부	157
4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 시 학력 표기 관련	158
43. 대학 자진 폐지 시 학생 동의 관련	159
4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관련	160

30. 부모가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현재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입니다. 부모가 대학 교수이면 자녀가 부모가 소속한 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2-12-13 전화문의(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교수인 부모가 소속한 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학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가 대입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 과정 및 성적관리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지난 2018년 12월 '교수-자녀 간의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권고(안)'을 마련하여 각 대학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대학은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학생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강의를 수강하려고 하는 학생이 자녀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대학 본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해서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학사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1.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 도입 여부



질의요지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원래 학사편입 과정은 3년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면서 학사편입 과정의 2년으로 수업연한을 단축한다고 하는데 이게 확정된 건가요?

회신내용

2023-10-16 전화문의(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 도입 관련, 간호인력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었으나 검토 결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32. 대학 교직원의 성범죄에 따른 인사 조치 관련



질의요지

최근 대학 교직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학에서 징계 조치 없이 계속 근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2-22 전화문의(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대학경영지원과)

- (교원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및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대학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항이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항에 대한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에 따라 사립대학 교원도 준용)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 관련)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따라 사립학교는 행동강령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법인도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대상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2항 제4호(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따라 성범죄 벌금형 선고자는 품위유지 위반자에 해당되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징계)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정관과 징계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33. 2022년 이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관련 가이드라인' 확인 방법

질의요지

교육부의 <2021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까지는 행정사항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022년도 자료부터는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없습니다. 2022년도부터 아예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2022년도와 2023년도 자료에서 빠진 것인가요?

회신내용

2023-04-17 전화문의(대학규제혁신국 대학재정과)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2021학년도까지는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실었으나 2022학년도부터는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에 실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4. 사립대학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



질의요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공공기관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설치한 기관이나 국립대학교 등을 생각하는데 일반 사립대학도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나요?

회신내용

2022-12-06 전화문의(대학규제혁신국 대학경영지원과)

-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안내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는지 여부는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안내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로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35. 대학생 현장실습생에게 명절비 지급 가능 여부



질의요지

저는 대학생 현장실습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현장실습생에게 협약에 따라 210만원의 실습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습 중인 한 학생이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회사에서 이 학생에게 명절비를 추가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추가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과 관련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3-09-26 전화문의(지역인재정책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생 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의 법령 해석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명절비는 근로에 대한 보수로 간주되지 않아 회계처리 및 세금 등에 대한 사항은 소관 부처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학교 주간수업 병행가능 여부

질의요지

저는 현재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 중입니다.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기간 중 주간 수업을 듣지 말라는 공지가 있었으나, 저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실습 중심의 주간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이 수업은 주로 주말을 이용해 조별 과제를 하는 수업으로,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제 졸업에 필수적인 실습 과목이기에, 현장실습과의 병행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2023-04-04 전화문의(지역인재정책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 운영규정」에는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이 주간 수업을 병행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간이 실습 기관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현장실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간수업을 병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과 사전에 협의한 수강에 대해서는 학교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 확인 방법



질의요지

계약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대학과 각 대학들의 계약학과 유형, 산업체 경비부담률·학생경비부담률은 각각 몇 %로 하고 있는지, 외부학습장을 이용하는지 등 대학들의 계약학과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신내용

2023-02-23 전화문의(지역인재정책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통합검색란에 계약학과 설치 운영현황으로 검색하면 공시로 되어 있는 표의 공시항목의 계약학과 설치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보기의 해당 년도를 선택하여 파일을 열면 계약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각 대학들의 세부 정보(현황)를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8.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표준 매뉴얼 열람 방법



질의요지

저희는 OO대학의 산학협력단인데요, 예전 교육부에서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했었는데 교육부 홈페이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2023-03-22 전화문의(지역인재정책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2016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의 산학협력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해당 매뉴얼은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www.uicc.re.kr)-알림마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9. 개인사업자의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생 입학 자격 요건



질의요지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산업체 위탁교육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체 위탁교육을 신청할 때 사업자는 소득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0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업체 위탁교육에 입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12-16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관 고등직업교육정책과)

- 매출이 없고 소득이 0원이라면 개인사업자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업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체 위탁교육생 선발의 기본 요건 중 하나는 산업체에 9개월 이상 재직 중인 것입니다. 소득증명원 등 납세증명이 어렵다는 것은 사업 운영 및 재직 여부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 산업체 위탁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산업체위탁교육 협의를 맺은 해당 대학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 시 제출 서류



질의요지

지방의 한 대학의 만학도 전형을 살펴보니, 퇴직자나 사업자가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입학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OO대학의 OO학과 산업체위탁교육생 모집 요강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은 이해가 가지만, 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입학 선발 기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혹은 소득이 많은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2-11-03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고등직업교육정책과)

- 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 시,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학 내 위탁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 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안내한 소득금액증명원은 납세증명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보이며, 교육부의 <2023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에 어긋나는 서류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4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전과 가능 여부



질의요지

저는 현재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와 관련하여 파산이나 4년제 대학과의 통합과 같은 문제들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심화과정에 등록한 학생이 전과를 할 수 있는지, 또한 학교가 4년제와 통합하여 제가 다니는 과정이 폐지되고 다른 전공심화과정은 유지될 경우 전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4-10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관 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전공심화과정은 '전공'과 관련한 각종 요건(전문학사 학위과정 전공의 관련성, 재직 분야의 전공 관련성)이 충족되어야만 입학이 허용되는 직무심화교육과정입니다. 동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과는 불가능합니다. 학교의 통합에 따라 일부 전공심화과정이 폐지될 경우 다른 교육과정의 전공심화과정으로의 전과 가능여부는 대학의 학칙 등 경과규정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학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관련 Q&A)

4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 시 학력 표기 관련



질의요지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전공심화과정을 등록하여 마지막 학기에 있습니다. 전공심화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면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4년제 대학 졸업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3-09-01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고등직업교육정책과)

- 학력 부분은 동등 학력으로 인정하며, 학위명을 OO전문학사가 아닌 OO학사로 표기 가능합니다.(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관련 Q&A)

43. 대학 자진 폐지 시 학생 동의 관련



질의요지

대학이 자진해서 폐교를 하려고 할 경우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진 폐교 시 반드시 학생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3-10-12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고등직업교육정책과)

- 대학 자진 폐지(폐교) 시 학생들의 동의 여부에 대한 조사 자료는 폐지 여부 결정에 필수요건은 아니나, 폐지(폐교)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관련



질의요지

저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2021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와 붙임자료의 분석 내용을 확인했지만,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2023-08-23 전화문의(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정책과)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통계간행물'에서 '취업통계연보(12월 31일 기준) 발행연도 2022'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찾으시는 내용이 없다면, 교육통계서비스의 '알림·서비스 - Q&A'를 통해 추가적인 질의나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IV

국제교육·평생교육

2023년도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국제교육

1. 한국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인지 질의 164
2. 외국대학 학위 인정 여부 165
3.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요청 166
4. 유학생 유치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 167

1. 한국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인지 질의



질의요지

34개 재외한국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인가요?

※ 재외한국학교 현황(34개교): 동경, 금강, 교토, 건국, 북경, 연변, 상해, 홍콩, 천진, 옌타이, 대련, 청운, 선양, 무석, 소주, 광저우, 웨이하이, 모스크바 등

회신내용

2023-04-26 (글로벌교육기획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한국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과정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학력의 인정)에 따라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의 초·중등학교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 외국대학 학위 인정 여부



질의요지

외국대학 학위의 국내 인정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2023-04-04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 우리나라는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2005다22671은 외국대학 학위소지자의 학력인정의 근거로 동 조항을 참조하면서 원칙적으로 대학원 입학자격의 인정은 당해 대학원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대학 학위 인정의 결정주체는 해당 수요기관(대학, 기업 등)인 것으로 해석되며, 우리 부는 이러한 수요기관의 외국학위 인정 절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학위정보센터*(누리집 karic.kr)를 지정·운영하여 국내외 교육제도·고등교육기관의 법적 지위 및 자국 내 인가여부, 이수한 프로그램의 수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약」('17.12월 비준, '18.2월 발효)에 근거하여 지정·운영중인 국내·외 고등교육기관 정보 제공 전담기관

3.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요청



질의요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3-04-25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 우리부는 매년 4. 1.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출처: KEDI 한국교육개발원)를 교육부 홈페이지(정책-국외(유학) 교육)에 탑재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4. 유학생 유치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



질의요지

교육부에서는 대학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3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계획(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유학생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내용

2023-10-06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은 대학-기업-지자체 간 협업을 기반으로 유학생 유치 단계부터 학업, 취업 및 정주까지 단계별 질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유학생 입학 후에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기업 인턴십 등 진로 탐색 기회를 넓혀, 유학생의 지역 정주 및 사회 통합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부는 법무부와 함께 매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증심사·실태조사 결과 질 관리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모집을 제한하는 등 유학생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예비 유학생에게도 내실있는 유학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외국 학생이 허위 정보나 정보 부족으로 부실대학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

- 5. 평생교육시설에서 개설 가능한 교육과정의 범위 170
- 6. 직원연수 목적으로 소속 직원(성인) 대상 1:1개인교육 시 학원법
적용 여부 171
- 7. 지자체 공모사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사업 수행 중 소수의 학생들에게
일회성 체험 제공 시(수익자부담비 발생) 학원법 적용 여부 172

5. 평생교육시설에서 개설 가능한 교육과정의 범위



질의요지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을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으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2023-02-0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평생교육법」제6조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적합성 등 실체적 사유로 교육시설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2016. 7. 22., 선고, 2014두42179, 판결]를 고려할 때,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과정의 운영은 가능합니다.
- ‘골프, 헬스’ 등은 교육과정의 적합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더라도 운영 가능성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시설을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도 신고해야 되는지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직원연수 목적으로 소속 직원(성인) 대상 1:1개인교육 시 학원법 적용 여부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구성하는 직원(성인)을 대상으로, 취약 분야에 대해 1:1개인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학원법 제2조(정의)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4-21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학원법」제2조 1호 다목에서는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은 학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민원인께서 실시 예정인 직원(성인) 대상 1:1 개인교육은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교습을 하는 성격이 아니기에, 「학원법」에서 정의하는 과외교습의 범주는 아닙니다.
- 따라서 언급하신 사례는 「학원법」에는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 지자체 공모사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사업 수행 중 소수의 학생들에게 일회성 체험 제공 시(수익자부담비 발생) 학원법 적용 여부



질의요지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비영리단체에서 체험활동 운영을 외부업체에 일회성으로 위탁하여 9인 이하의 초중학생에게 원데이클래스를 제공했습니다. 대부분의 경비는 비영리단체에서 지급했고 학생들도 소정의 참가비를 냈는데, 이 경우 위탁받은 업체는 학원법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6-30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학원의 정의는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10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입니다.
- 언급하신 경우는 학원의 정의에 속하지 않는 사례로 보여지므로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전화문의

8. 요가학원의 <학원 등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174
9. 학원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 범위	175
10. 개인과외교습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가능 여부	176
11.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술 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부	177
12. 장애 대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	179

8. 요가학원의 <학원 등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질의요지

교육부가 제공한 <학원 등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고에는 교습비, 등록번호, 교습과정이나 교습과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이 요가학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9-14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교육부의 <2017년 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학원법」에 의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교습비 등,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의 중요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가학원은 「학원법」에 의한 학원이 아니므로, <2017년 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인쇄물·인터넷 등에는 "신문, 정기간행물, 전단, 팸플릿, 포스터, 인터넷(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포함)"이 포함

9. 학원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 범위



질의요지

학원 종사자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의무교육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라고 교육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법령을 찾아보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만13세 미만 어린이를 직접 교습하는 초등부 학원 강사만 대상이 되는 건지, 만13세 미만이면 중학생도 있을 수 있으므로 중등부 학원 강사도 대상이 되는지, 학원이 대상기관이면 학원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강사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의무교육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신내용

2023-06-28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어린이안전법」)* 제정·시행(20.5.,20.11.)에 따라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안전법」에 의한 법정교육 대상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 어린이와 대면하여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이며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는 학원에서 지정합니다. 「어린이안전법」의 제정 취지는 어린이 이용 시설에서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경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인 만큼 중등부 강사이더라도 수업을 받는 학생 중에 13세 미만의 학생이 있다면 안전 교육 대상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 제16~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10. 개인과외교습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가능 여부



질의요지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날이 추워지다 보니 학습자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셔틀버스로 귀가시켜 달라고 하는데 개인과외교습자도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2-11-15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다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1.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침술 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부



질의요지

평생교육원에서 침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침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8-24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에 따르면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방법 등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 시설 운영 시 교육과정의 적합성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6.7.22. 2014두42179)*를 고려할 때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과정처럼 개별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만이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침술 관련 실습교육 과정 운영 또는 교육 수료 후 일반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대법원 2014두42179 판결문 제6면에서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그러한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명시한 바 있음.

- (대법원 2012도99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사건 보도자료 - 대법원 공보관실) 대법원 2014두42179 판결은 행정청이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통해 평생교육원 설립·신고 단계에서 위법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사전에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임. 행정청이 해당 교육과정 개설 운영 평생교육원으로 신고·수리를 하더라도 신고·수리 후에 실제 이루어질 침·뜸 교육과정이 항상 적법하다거나 그러한 교육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님

- 아울러 교육부는 2014년 이후 평생교육,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운영 참고사항을 일부 수정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운영안내(2022.9.13.)'를 대학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교육부는 침술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관심 있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지 직접 확인해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12. 장애 대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



질의요지

저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입니다. 수동 휠체어에 동력 보조 장치를 장착하여 전동 휠체어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처 장애인지원센터에서 대학생에게 이러한 동력 보조 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2023-03-16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장애학생평생교육팀)

-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 학생 지원인력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 조항 제정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하여 관련 경비를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장애 대학생 보조기기 지원 영역에 선정된 대학의 경우, 국고를 지원 받아 장애 학생의 학습권 확보와 이동권 보장 등 장애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한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V

기타

2023년도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1. 교육부 국유재산 용도폐지 시 관리·처분



질의요지

교육부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면 관리 주체는 누가 되나요?

회신내용

2023-03-28 (운영지원과)

-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한 때에는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하고, 총괄청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 관련 규정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5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2.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2. 개편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질의요지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편 전에는 유·초·중·고 교육에만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고등교육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2023-03-07 전화문의(교육자치협력안전국 지방교육재정과)

-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설치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2022.12.31. 제정, 2023.1.1. 시행)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에서 교육 지원 대상을 고등교육까지 확대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 자격증 취득 비용의 성격



질의요지

직업계고 학생이 직업계고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인한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100만원이 장학금 성격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2023-01-16 전화문의(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교육부는 대학졸업자에 비해 취약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여건 개선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수업일 감소, 실습시간 부족 등으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과 2022년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이 취업에 필요한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우선 시행하면서 2023년에는 해당 사업이 미시행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이 사업에서의 자격증 취득 비용(1인당 최대 100만원)은 자격증을 취득한 비용을 보존해 주는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장학금 성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교육부 홈페이지 읽기전용프로그램 이용자 제한 여부



질의요지

교육부 홈페이지 이용안내의 읽기전용 프로그램에 한글, 엑셀 등 뷰어설치프로그램이 있던데 개인이 아닌 기업에서도 이 뷰어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회신내용

2023-07-25 전화문의(대변인 홍보담당관)

- 교육부(www.moe.go.kr)에 안내된 각 읽기전용프로그램(뷰어프로그램)은 개인, 기업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총괄 : 반부패청렴담당관 김 관 영

기획 및 편집 : 사무관 오은경, 주무관 김우섭, 주무관 심규문, 주무관 조채원

인쇄일 : 2023년 12월

발행일 : 2023년 12월

발행처 :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우 30119)

인쇄처 : 주현기획(☎ 044-864-2020)

본 사례집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 국민참여민원 - 민원 - 질의회신사례집

사례집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044-203-60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